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해지 및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입찰자가”를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이하 이 항에서 “입찰자”라 한다)가”로, “입찰참가자”를 “입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 입찰일(입찰자가 없는 경우 최초 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가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여성기업 또는”을 “여성기업,”으로, “따른 장애인기업”을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해제하거나 해지한 계약의 당초 계약체결일)”로,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5”를 “10”으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을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 중 “10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과”를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공고입찰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약	5.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u> <u>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u> <u>창업 지원법」 제2조제11</u> <u>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u> <u>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u> <u>매계약 또는 용역계약</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 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① ----- ----- ----- ----- -----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 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 (이하 이 항에서 “입찰자”라 한다)가 --- 입찰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최초 입찰일(입찰자가 없는 경우 최초 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가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여성기업, -----

---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 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 서. (생략)	4. ----- ----- ----- 가. ~ 서. (현행과 같음)
<신설>	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 달기업공제조합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제27조제1항에 따
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제하
거나 해지한 계약의 당초 계
약체결일)----- 같다]-

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가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⑧ (생략)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 같은 항 제2호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0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 나목-----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 4. (생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
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
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
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
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

-----.

1. -----
----- 4억원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
제·해지, -----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 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 다.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